

5 복지

(1) 공적 연금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만 2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인 분은 외국인 분도 포함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2년 1월 1일 국적 요건 철폐)  
일본의 회사, 공장이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분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입 절차

국민연금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서 합니다.

후생 연금보험은 근무처의 회사 등이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국민연금의 별도 가입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연금에 가입되면 연금 수첩이 교부되므로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 보험료

연금제도에 가입하신 분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다음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인출된다
현금 납부(지로)	일본연금기구에서 송부되는 지로로 금융기관, 우체국, 편의점에서 납부한다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전자 납부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한다

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은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보험료의 면제·납부유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 중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보험료의 면제·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내용이 인정되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는 ‘학생납부특례제도’로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급부

가입자(피보험자)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일정한 급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재류 외국인 분에게는 탈퇴 일시금의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또는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간이 6 개월 이상이고 노령 연금 급부의 수급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분이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귀국 등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어진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절차, 보험료 납부, 연금 지급의 청구, 필요로 하는 각종 신고, 그 외의 연금에 관한 상담은 각 담당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연금기구 HP 외국어 대응 페이지

<http://www.nenkin.go.jp/international/index.html>

◇◇ 제도의 개요 ◇◇

① 국민연금

■ 가입자의 종류와 보험료 납부 방법

제 1 호 피보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의 자영업, 농림어업 등의 분과 그 배우자 (2 호, 3 호 피보험자를 제외)</li> <li>· 만 20 세 이상인 학생</li> </ul>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제 2 호 피보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원이나 공무원 (후생연금 가입자)</li> </ul> 월급에서 공제, 회사 등이 납부
제 3 호 피보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원이나 공무원에게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li> </ul> 회사원이나 공무원의 연금 제도에서 부담하므로 개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료

정액 보험료	월액 16,540 엔 (선납 할인제도 있음) ※2020 년도의 보험료액
부가 보험료	월액 400 엔 (제 1 호 피보험자로 희망하는 분이 납부합니다.)

■ 연금의 종류 ※2020 년도의 연금액

노령기초연금	피보험자 기간(보험료 납부 및 면제 기간)이 10 년 이상으로 65 세가 되었을 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 ] 781,700 엔 (40 년간 납부한 경우의 만기 금액)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정해진 기준의 장애를 얻게 된 분으로,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동안 납부한 분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 1 급: 977,125 엔, 2 급: 781,700 엔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됨)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동안 납부한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자녀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 781,700 엔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됨)
제 1 호 피보험자만의 급부	과부연금, 부가연금, 사망일시금, 탈퇴일시금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는 일본 연금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개국 언어의 팸플릿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연금기구 HP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http://www.nenkin.go.jp/pamphlet/kokunenseido.html>

② 후생연금

■ 보험료 및 연금액

후생연금보험 등의 피용자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급부인 기초연금액에 가산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 금액이 결정되며 보수나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액합니다.

■ 연금의 종류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1 급, 2 급, 3 급), 장애 수당, 유족후생연금, 탈퇴일시금

문의처

연금사무소

(2) 생활보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의 사망, 질병, 사고 등으로 수입이 끊어져 자력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 정도에 따라 필요한 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주 또는 정주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활동이 인정되고 있는 정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따른 보호 준용의 대상이 됩니다.

◇ 보호의 종류 :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례부조

문의처      복지사무소, 시·구·정 사무소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제도

취업 지원 및 그 외의 자립에 관한 문제 상담, 필요 정보 제공 및 조언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상담 지원사업의 실시, 주거확보 급부금 지급 그 외의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의 자립 촉진을 도모합니다.

사업의 종류	필수 사업	자립상담 지원사업, 주거확보 급부금
	임의 사업※	취업준비 지원사업, 일시생활 지원사업, 가계개선 지원사업, 아동학습·생활지원사업

※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각 사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상담지원창구》  
※복지사무소 설치 사정이 직영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4) 개호보험

① 개호보험제도란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여 요개호 상태로 된 이용자가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적 구별없이 적용됩니다.

② 가입 대상자

개호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은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미만인 의료보험 가입자 및 만 65세 이상인 분으로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재류하는 등의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입니다.

또한, 3 개월 미만이라도 입국 목적이나 입국 후의 생활 실태에서 3 개월 이상 체재한다고 인정되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③ 문의

개호보험의 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절차, 급부(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 가입 절차→신고

가입을 위한 절차는 필요없지만 만 65 세에 달했을 때는 시·정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보험료의 금액·납부 방법

A	<p>제 1 호 피보험자 (시·정 주민 중 만 65 세 이상인 분)</p> <p>보험료 금액은 거주하시는 시·정이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액 일정액 이상은 연금 공제, 그 이외는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p> <p>또한,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B	<p>제 2 호 피보험자 (시·정 주민 중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미만인 의료보험 가입자)</p> <p>보험료의 금액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에 가산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며 각 의료보험자가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p>
C	<p>보험종</p> <p>기본적으로 만 65 세 이상인 분 전원에게 교부됩니다.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미만의 분의 경우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등에 교부됩니다.</p>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한 만 65 세 이상인 분
- 지정된 질병이 원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한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미만인 분

■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의 여부 및 개호의 필요도(요 개호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시·구·정에 요 개호도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인정되면 신청일 이후에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 개호 인정을 받은 분은 거택개호(개호예방) 지원사업자가 케어플랜(이용자의 희망이나 심신의 상황을 근거로 한 개호서비스의 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필요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종류	주요 서비스의 종류	
재택서비스 ( '요 지원' 분을 위한 개호예방 서비스를 포함 )	방문개호	방문 개호원이 입욕, 배설 등의 신체개호나 조리, 청소 등의 생활 지원을 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영양상의 보살핌과 진료 보조를 한다.
	통원개호	데이 서비스센터에 다니며 입욕, 식사 등의 개호나 기능훈련 등을 한다.
	단기입소 생활개호	가족의 행사 등으로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개호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지역밀착형 서비스 ( '요 지원' 분을 위한 개호예방 서비스를 포함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방문, 통원, 숙박 등을 하여 입욕 등의 개호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적은 인원의 인지증 요 개호자가 공동 생활을 하는 주거에서 개호나 일상 생활을 보조한다.
시설 서비스 ( '요 지원'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호 노인 복지시설	원칙적으로 요 개호 3 이상의 분으로 거택에서의 개호가 곤란한 분을 특별 요양 노인홈에 입소하게 하여 개호나 일상 생활을 보조한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간호, 의료적인 관리하에 재택 복귀를 위한 개호, 의료, 기능훈련 등을 한다.

■ 이용자 부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소득에 따라 그 비용의 10% (일정 이상의 소득자는 20% 또는 3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외에 식비와 거주비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부담이 현저하게 높은 금액이 되었을 때 환급되는 경우나 소득이 낮은 분은 경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요 개호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5)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① 재택서비스

시·정에 따라 실시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종류	내용
생활지원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배식 서비스 등
개호 예방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개호 예방 교실 등
가족 개호 지원	개호 교실의 개최, 인지증 고령자 보살피기, 개호자 교류회의 개최 등

② 시설

재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분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	신청 창구	내용
양호노인홈	시·정	만 65 세 이상으로 생활보호, 시정촌민세 소득할 비과세인 분 등
경비 노인홈	시설	만 60 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활이 곤란한 분 등
생활지원 하우스	시·정 시설	만 60 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활이 곤란한 분 등
유료 노인홈	시설	자유 계약·전액 본인부담·만 60 세 이상인 분 등

③ 그 외 소규모 시설

재택 생활이 곤란한 독거 노인 등이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소규모 노인홈, 토탈케어홈, 안심 리빙, 자립지원형 그룹홈, 소규모 지역 케어 촉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

(6)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① 장애인 수첩 등

장애가 있는 분에게 일관된 상담·지도를 하여 다양한 원조를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장애 종별에 따른 수첩 교부제도가 있습니다.

수첩을 소지하면 여객 운임의 할인, 세금 공제,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첩의 종류	문의처
신체장애인 수첩	시·구·정 사무소
요육수첩	어린이가정센터, 시·구·정 사무소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시·구·정 사무소

② 장애복지서비스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분에게 가까운 시·정이 장애의 종류 (신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난치병 등)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조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국가, 현 및 시·정이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방문계 서비스 ·단기 입소	장애가 있는 분이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홈헬프 서비스, 쇼트 스테이 등의 재택 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
낮 활동계 서비스	일상생활과 취업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거주계 서비스	장애가 있는 분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홈 등의 서비스를 제공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장애 아동은 복지형 또는 의료형에 의한 입소 지원이나 아동발달 지원 등의 통원 지원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	장애가 있는 분의 자립과 사회 참가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응훈련사업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사업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복지사무소

(7) 아동을 위한 서비스

① 보육원

0 세부터 초등학교 취학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 보육을 하는 보호자 등이 취로 등의 이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나 보육 시간 등이 다릅니다. 입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② 인정 어린이집

0 세부터 초등학교 취학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취로 상황 등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정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나 보육 시간 등이 다릅니다. 입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③ 방과 후 아동클럽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낮에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아동관이나 학교의 여유 교실을 활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8) 원폭 피폭자를 위한 서비스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원폭 피폭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호를 합니다.

① 의료비

원폭피폭자가 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 상당분을 공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

② 수당 지급

원폭 피폭자에게 건강관리 수당 등의 원폭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

③ 원폭 양호 홈

거택에서 개호 등을 받을 수 없는 히로시마현 내의 피폭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지역	문의처
히로시마시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	히로시마현 피폭자지원과 ☎082-513-3109
히로시마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주소지의 구청

(9) 그 외의 서비스

그 외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의 창구, 복지사무소, 후생환경사무소, 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복지사무소 후생환경사무소·보건소 보건·의료·복지관계 상담기관
-----	--